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서울시교육청 학교 마약 예방 교육 추진 현황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 강순원 ☎399-9599

학교보건팀장 : 전영희 ☎9576

담당 : 최경수 ☎9662

담당 : 나현수 ☎9680

1 마약퇴치 예방교육 실태

□ 사업 개요

○ 목적

- 불법 마약 및 유해 약물의 청소년 유입을 차단하고 올바른 건강 선택 역량 강화
-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함양 및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예방교육 체계 확립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보건법」 제9조(보건교육)
-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 교육부 2025학년도 범교과 학습 주제 운영 지침,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

○ 주요 내용

- (학교)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
- (학생) 전문 강사 인력풀 활용하여 학생 교육 지원, <초6, 중3, 고3> 학생 대상 전환기 교육 및 학교급별 예방 교육자료 개발·보급
- (교직원, 학부모) 서울시, 마퇴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직원, 학부모 대상 연수 및 홍보
- (유관기관) 서울시·서울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업무 협력

□ 마약류 예방 교육 현황

○ 학교 마약류 예방 교육 근거 및 시간

- 교육은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 교과, 관련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실시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 시간>

구 분	연간 교육 시간(연간)			비고
	초	중	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5	6	7	약물 오남용 교육 포함
학교보건법 (교육부 학생건강증진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지침)	17			1개 학년 보건교육 시간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10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포함

○ (최근 3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현황

구 분	전체 학교수	마약류 등 예방 교육 운영 학교수			
		전 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3년	1,314	1,314(100%)	604	389	321
2024년	1,310	1,310(100%)	605	387	318
2025년	1,311	1,311	2025.12월 교육 현황 수합 예정		

※ 모든 학교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완료

※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 마약류 예방 단독 주제의 교육, 마약류가 포함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유해 약물 예방 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교육시간 따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학교급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실시(초 5차시, 중 6차시, 고 7차시)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 시기	물량
학교급별 예방교육 운영 (초 5차시, 중 6차시, 고 7차시)	'25. 연중	초·중·고 전체 학교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약사·퇴직교원·변호사 등)	'25. 연중	1,500학급
AI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초6)	'25. 7.~10.	200학급
메타버스 예방 교육 지원(중3)	'25. 11.~12.	100학급
수능 이후 전환기 교육 지원(고3)	'25. 11.~12.	2회
마약류 담당교원 연수(상·하반기)	'25. 2./10.	2회
온라인 학부모 연수(오은영 박사 특강)	'25. 3.	1회(약 900명)
가정 연계 가정통신문 발송(교육청 일괄)	'25. 연중	2회
약물 오남용 예방 건강증진학교 운영	'25. 연중	4교(초 2교, 고 2교)

□ 추진 현황 및 실적

○ 업무협약(2023년, 2025년 2차례 추진)

- [1차] 교육청-서울시-서울경찰청-마약퇴치운동본부 체결(2023.6.19.)

[협약 내용]

- ▶ 협약목적: 마약류 범죄 및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검사·치료·재활 지원체계 구축
- ▶ 기관별 주요 역할
 - (서울교육청) 학교 내 마약류 예방 교육 총괄 추진, 교직원·학부모·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
 - (서울특별시) 교육홍보, 마약검사 및 중독자 치료 및 재활, 단속점검 등 전 단계 사업추진
 - (서울경찰청) 마약류 단속점검, 청소년 등 마약사범 연계, 학교전담경찰관(SPO) 교육 지원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예방교육 역량강화 및 마약류 중독자 재활프로그램 추진

- [2차] 교육청-서울시-서울경찰청-서울시의사회-저스피스재단-서울주요대학(20개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25. 6. 23.)

[협약 내용]

▶ **협약목적:** 청(소)년 마약류 예방 협력체계 구축

▶ **기관별 주요 역할**

- (서울교육청)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자료 제공
- (서울특별시) 마약류 대응 협력체계구축, 단속점검, 대응예방, 치료재활
- (서울경찰청) 청소년 마약투약자 서울특별시 마약관리센터연계
- (서울시의사회) 청소년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 지역기반 구축
- (저스피스 재단) 청소년 마약 예방 문화활동을 통한 캠페인 확산
- (주요대학 20교) 대학생 마약류 예방 교육, 상담 및 치료연계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중독자 재활프로그램 추진

○ **전문 강사 활용 학생 교육 지원**

- 학생 마약 예방 교육 지원 중(중·고등학교 1,500학급)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법무부와 협업하여 학교 교육 지원 중(총 2,000학급)

○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교육 지원**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학교급별 교육자료 보급(식약처와 협력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자료 10종 개발·보급)
- 중·고등학교 교원용 지도서 보급(교육부 제작)
- AI활용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중(200학급)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건강증진학교 4교 운영 중

건강증진학교란?

학교 스스로 학교의 총체적인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전체 교직원·학부모
·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교

※ 운영 주제: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초 2교, 고 2교 운영 중)

○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강화**

- 학교 마약 예방 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원(2025. 2.)
- 학부모 대상 교육자료 개발·보급(총 2종)
- 학부모 대상 온라인 연수 운영(2025. 3. 25.(화)/ 오은영 박사)
- 학부모 대상 가정연계 가정통신문 안내(2025. 6월, 8월)
- 관리자 대상 연수(교장, 교감 자격 연수 시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 중3 대상 전환기 교육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 지원: '25. 11.~12.
 - 고3 수능 이후 마약류 예방 교육 지원: '25. 11.~12.
 - 학교급별 교육자료 안내 및 활용법 연수 예정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25. 8. 1.기준)

사업명	'24 예산			'25 최종예산	집행액 및 집행률		비고
	본예산	특교 등	계		원인행위액 (집행률)	지출액 (집행률)	
마약 예방 교육 지원 (전문강사 운영, 교육자료 개발, 연수 운영 등)	281,820	157,000	438,820	307,790	230,658 (75)	182,158 (59)	위탁용역 비용 미지출
합계	281,820	157,000	438,820	307,790	230,658	182,158	

2 마약퇴치 예방교육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

□ 사업 개요

○ 목적

- 서울특별시 학생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기여

○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 주요 내용

-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제3조)
-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행계획과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 실적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5조~제6조)
-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표준안 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7조~제10조)
- 학교의 장이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5항)
-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 동아리,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3항)

□ 추진 경과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제정
(2024.1.11. 제9089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
(2024.5.23. 제920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시행 2024. 5. 23.] [서울특별시조례 제9207호, 2024. 5. 2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체육건강예술교육과), 02-399-96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연수
4.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자료 제공
5.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실행계획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적조사)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학교안전교육,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6조의 결과에 따라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신설 2024.5.23.>

제8조(예방교육 표준안 제공)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핵심 교육 목표
2. 교사용 지도안 및 보조자료
3. 학생용 워크북 및 영상자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홍보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자 등에 대해 유해약물 용어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내 동아리,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장려할 수 있다.<신설 2024.5.23.>

제10조(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적조사에 관한 사항
3. 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해약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9089호,202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마약사범(중독자) 재활 실태

교육청 현황

-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실태는 교육청에서 담당하지 않으며 경찰청에 공유 가능한 사항(청소년 마약사범 인원)만 제공됨
- (전국) 청소년 마약류 사범 현황: 2025. 6월 기준 267명(대검찰청)
 - ※ 2024년 청소년 마약류 사범 649명

4

마약퇴치 홍보(캠페인 등) 현황

□ 사업 개요

○ 목적

- 청소년·지역사회의 마약 문제 경각심 제고와 예방 문화 확산
-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마약 퇴치 환경 조성

○ 근거

-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 유관기관 업무협약(서울시·서울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 주요 내용

-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업무협약(1, 2차)
- 지하철 전광판·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유튜브 홍보
- 마약류 및 흡연 예방 공모전 운영
- 교육박람회·걷기대회 등 학생 참여 행사 부스 운영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 시기	물량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공모전	'25. 5.~6.	학생 479명 참여
마약퇴치 걷기대회	'25. 11.	학생 및 시민 2,000명 이상
지하철 전광판 홍보	'25. 5.~6.	2호선 지하철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 홍보	'25. 5.~6.	서울 스마트보드 활용 아파트 전체
서울가족 북웨이브 행사 부스	'25. 6.	학생, 학부모 550명 참여
진로교육박람회 부스	'25. 7.	학생 314명 참여
유튜브 홍보 콘텐츠 제작·탑재	'25. 연중	총 6종 제작·탑재

□ 추진 현황 및 실적

○ 홍보 및 캠페인

- 서울가족 북웨이브(2025. 6. 14) 행사에 마약·흡연 예방 부스 운영: 550명 참여
- 지하철(2호선),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 보드 홍보(2025. 5.~6.)
- 진로교육박람회 ‘마약 예방’ 부스 운영(2025. 7. 16.~7. 19.): 314명 참여
- 마약 예방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 등 활용하여 홍보

○ 공모전(보건안전진흥원 주관)

- 마약류 및 흡연 예방 공모전 실시(2025. 5.~6.)
- 초중고 학생 479명이 참여하여 우수 작품 선정 및 시상(최우수 3, 우수 6, 장려 9)

□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마약 예방 캠페인 등 홍보 확대

- 업무협약기관과 협력하여 캠페인 추진 예정(마약퇴치 걷기대회 등)
- 마약류 예방 공모전 작품 활용하여 홍보 예정
-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주기적 발송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25. 8. 1.기준)

사업명	'24 예산			'25 최종예산	집행액 및 집행률		비고
	본예산	특교 등	계		원인행위액 (집행률)	지출액 (집행률)	
마약류예방캠페인및문 화조성	65,330	0	65,330	30,330	29,630 (98)	29,630 (98)	
합계	65,330	0	65,330	30,330	29,630	29,630	